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23 선고 2021가단5094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1. 7. 9.

판 결 선 고 2021. 7. 23.

주 문

1. E과 망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2. 5. 체결된 증여계약은 7,272,6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원고에게, 피고 B은 3,116,854원, 피고 C, D은 각 2,077,9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윤명화

별지